

<h1 style="margin: 0;">보도자료</h1> <p style="margin: 0;">2020. 1. 6.</p>	 <h2 style="margin: 0;">양형위원회</h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담당부서</td> <td>운영지원단</td> </tr> <tr> <td>담당자</td> <td>운영지원단장 이도행 판사 (☎ 3480-1924)</td> </tr> </table>	담당부서	운영지원단	담당자
담당부서	운영지원단			
담당자	운영지원단장 이도행 판사 (☎ 3480-1924)			

## 양형위원회 제99차 전체회의 결과

-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 및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상향
-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규 설정하여 군사법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을 도모
-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범위를 상향

○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0. 1. 6. 제9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는 한편,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였음

### 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2019. 10. 25. 수정안 의결 후 최종의결)

-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2012. 8. 20.)된 이후 4차례 공직선거법이 개정  
⇒ 공직선거법 개정 조항이 다수 존재하여 기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실무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높음
- 대유형1(매수 및 이해 유도)의 형량범위 수정 :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징역형에 비례한 벌금형의 적정화에 있으므로 벌금형 상향의 정도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의 벌금형 형량범위를 상향
- 대유형3(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의 유형분류 수정 : 공직선거법 제252조

개정으로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보도죄 및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위반죄의 법정형 상향 ⇒ 위 2가지 범죄를 개정된 법정형에 맞는 유형으로 재분류함

○ 2019. 10. 25. 제9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수정 양형기준 최종의결 ⇒ 이날 최종의결된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관보게재 후 2020. 2. 1.부터 시행될 예정

### ②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신규 수정안 의결 ⇒ 향후 의견조회절차 후 최종의결 예정)

-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신규 설정함(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추가함)
-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
- 군형법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감안하여 일반 성범죄에 비하여 가중된 형량 범위를 설정
-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참조하되, 군형법상 특수성을 반영하여 양형인자를 설정(특히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군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군사법원 사건인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규 설정함으로써 군사법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도모

### ③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신규 수정안 의결 ⇒ 향후 의견조회절차 후 최종의결 예정)

-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이 2018. 12. 18. 개정·시행(이른바 ‘윤창호법’)되면서 법정형 상향됨 ⇒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
- 종래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하였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

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신설하고 **형량범위를 상향함**

-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8년**(중전 일반교통사고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은 3년)으로 설정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조정<sup>1)</sup>으로 징역 12년까지 권고**(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한을 이탈하여 선고가 가능함)
-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5년**(중전 일반교통사고치상의 가중영역 상한은 2년)으로 설정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조정<sup>2)</sup>으로 징역 7년6월까지 권고**(치상의 경우 상해주수 2주 이내의 경미한 상해부터 중상해까지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함)
- 특히 특별가중인자인 **동종누범**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가중처벌하고, 일반가중인자인 **동종전과**에서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가중처벌

**4) 향후 일정**

- 2020. 1.경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보게재
- 2020. 2. 1.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 시행
- 2020. 3. 23. 제10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성범죄,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검토
  - 성범죄, 교통범죄의 수정 양형기준 최종의결
- 한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내채이용음란죄의 심의가 진행 중이며, 2020. 2. 17. 제100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제작, 유포죄를 심의할 예정**

1)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특별조정**으로 가중영역 상한의 1/2까지 가중[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이 8년이므로, 4년(=8년× 1/2)을 추가로 가중하여 징역 12년까지 권고]  
 2)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특별조정**으로 가중영역 상한의 1/2까지 가중[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이 5년이므로, 2년6월(=5년× 1/2)을 추가로 가중하여 징역 7년6월까지 권고]

**I.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현행 선거범죄 양형기준은 2012. 8. 20. 의결되어 2012. 9. 1.부터 시행됨
-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된 이후 4차례(2014. 2. 13., 2014. 5. 14., 2015. 12. 24. 및 2017. 2. 8.) 공직선거법이 개정됨. 그 결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일부 선거범죄에 대하여 ① 법정형이 높아지거나 하한이 정해지고, ② 구성요건이 세분화되거나 내용이 보충, 수정됨
- 개정 조항이 다수 존재하여 기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실무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높음

**2) 수정 양형기준의 주요내용**

**1. 개요**

- 2019. 10. 25. 제9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의결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2020. 1. 6. 제99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 위 수정 양형기준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를 일부 수정하는 것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함

**2.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

- 대유형1 매수 및 이해 유도(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당내경선 관련 매수	- 8월, 50만원 - 300만원 <b>500만원</b>	4월 - 1년	8월 - 2년
2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10월, 100만원 - 500만원 <b>1,500만원</b>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3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4월 - 1년, 150만원 - 700만원 <b>2,000만원</b>	8월 - 2년	1년 - 3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6월 - 1년4월, 500만원 - 1,500만원 <b>2,500만원</b>	10월 - 2년6월	2년 - 4년
5	당선인에 대한 매수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6월 - 5년

- 수정내용

-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징역형에 비례한 벌금형의 적정화**에 있으므로 아래 표와 같은 **벌금형 상향의 정도를 반영하여 양형기준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것이 타당 ⇨ 벌금형이 권고되는 감경영역의 벌금형 상향을 상향함

유형	구분	법령	개정
1	당내경선 관련 매수	공직선거법 230조 7항	600 ↓ → 1000 ↓
		공직선거법 230조 8항	1000 ↓ → 3000 ↓
2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공직선거법 230조 1항	1000 ↓ → 3000 ↓
		공직선거법 230조 3항	1500 ↓ → 5000 ↓
		공직선거법 230조 4항	1000 ↓ → 3000 ↓
		공직선거법 230조 6항	1000 ↓ → 500~3000
		공직선거법 235조 1항	5 ↓ or 1000 ↓ (변경X)
3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공직선거법 230조 2항	1500 ↓ → 5000 ↓
		공직선거법 230조 3항	1500 ↓ → 5000 ↓
		공직선거법 235조 2항	7 ↓ or 2000 ↓ (변경X)
4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공직선거법 231조 2항	300~2000 → 300~5000
		공직선거법 231조 1항	500~3000 → 500~7000
		공직선거법 232조 1항	500~3000 → 500~5000
		공직선거법 232조 2항	500~3000 → 500~7000
5	당선인에 대한 매수		

○ 대유형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유형분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후보자비방	50만원 - 150만원	- 8월, 100만원 - 300만원	6월 - 1년, 250만원 - 400만원
2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70만원 - 300만원	- 10월, 200만원 - 800만원	8월 - 2년, 500만원 - 1,000만원
3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8월, 300만원 - 600만원	6월 - 2년, 500만원 - 1,000만원	1년 - 3년

- ▶ ~~여론조사결과 왜곡 논평·보도 금지 등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1유형에 포함
- ▶ **여론조사결과외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함
- ▶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3유형에 포함

- 수정내용

- 공직선거법 제252조 개정

	개정전 공직선거법	2015. 12. 24. 공직선거법 개정
여론조사결과외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	252조 1항, 96조	252조 2항, 96조 1항 <b>5년 이하 징역</b> 또는 300~2,000만원 벌금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	<b>3년 이하 징역</b>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252조 1항, 96조 2항 <b>7년 이하 징역</b> 500~3,000만원 벌금

- 여론조사결과외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 및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는 종전 양형기준에서 1유형에 속했으나, **개정된 법정형에 맞는 유형으로 재분류** ⇨ ① 여론조사결과외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252조 제2항)를 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②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252조 제1항)를 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각 포함

## II.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

### ①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2017. 7. 7.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군사법원 사건 중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높은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신규 설정함(다만,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추가함)
- 군형법상 성범죄는 범죄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군인 또는 준군인(군무원 등을 의미함)인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함. 즉 군형법 적용 대상자인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
- 군형법상 성범죄의 법정형(일반 성범죄에 비하여 가중되어 있음)

유형	형법	군형법
	법정형	법정형
강간	§ 297	§ 92
	3년 ↑ 유기징역	5년 ↑ 유기징역
유사강간	§ 297조의2	§ 92의2
	2년 ↑ 유기징역	3년 ↑ 유기징역
강제추행	§ 298	§ 92의3
	10년 ↓ 징역, 1,500만 원 ↓ 벌금	1년 ↑ 유기징역
준강간·준강제추행	§ 299	§ 92의4
	§ 297 내지 § 298에 정한 형	§ 92 내지 § 92의3에 정한 형
강간등상해/치상	§ 301	§ 92의7
	무기 또는 5년 ↑ 징역	무기 또는 7년 ↑ 징역
강간등살인/치사	§ 301의2	§ 92의8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무기 또는 10년 ↑ 징역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 징역

### ②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내용

- 일반적 기준(군형법상 성범죄)
  - 적용대상 범죄

- 군인 등 강간(군형법 제92조), 군인 등 유사강간(군형법 제92조의2), 군인 등 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 군인 등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4)
-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위헌소원 등이 계속 중이고, 사건 수가 적어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함

- 형량범위(일반 성범죄에 비하여 가중된 형량범위 설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6월 - 1년 4월	10월 - 2년6월	2년 - 4년
2	군인등유사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군인등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강제추행(일반강제추행과 군인등강제추행의 비교)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군인등강제추행	6월 - 1년 4월	10월 - 2년6월	2년 - 4년

- 강간(일반강간과 군인등강간의 비교)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군인등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유형)</li> <li>○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li> <li>○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li> <li>○ <b>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b></li> <li>○ 임신(3유형)</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li> <li>○ 상습범인 경우</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li>○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 범행</li> <li>○ 동일 기회 수회 간음(3유형)</li> <li>○ 비난 동기</li> <li>○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당 금액 공탁</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 신뢰관계 이용</li> <li>○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참조하되, 군형법상 특수성을 반영하여 양형인자를 설정함
- 특히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군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 군인등강간, 유사강간죄에서는 행위인자인 특별감경인자를 설정하지 않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군형법상 성범죄)

- 적용대상 범죄 : 군인 등 강간 등 상해·치상(군형법 제92조의7)
- **형량범위**(일반 성범죄에 비하여 가중된 형량범위를 설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군인등유사강간 /군인등강간	3년 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 강제추행치상(일반강제추행과 군인등강제추행의 비교)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군인등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강간치상(일반강간치상과 군인등강간치상의 비교)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군인등유사강간/ 군인등강간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 III.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

####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이 2018. 12. 18. 개정·시행되면서 법정형 상향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개정 2018. 12. 18.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내용

##### ○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신설

- 종래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하였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신설

##### ○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형량범위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사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 소유형1 위험운전치사

- 종래 교통사고치사의 기본영역은 4월~1년 ⇨ 위험운전치사의 기본영역은 10월~2년6월로 형량범위 상향
- 종래 교통사고치사의 가중영역은 8월~2년 ⇨ 위험운전치사의 가중영역은 2년~5년으로 상향됨(특히 2개 이상의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사안에서

는 특별조정으로 7년6월까지 권고됨)

- 치사의 경우 상해주수 2주 이내의 경미한 상해부터 중상해까지 과실이나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함
- 특별가중인자로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및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이 있음
- 특히 특별가중인자인 동종누범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죄 전과를 포함하여 가중처벌하고, 일반가중인자인 동종전과에서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가중처벌함

##### - 소유형2 위험운전치사

- 종래 교통사고치사의 기본영역이 8월~2년 ⇨ 위험운전치사의 기본영역은 2년~5년으로 형량범위 상향
- 종래 교통사고치사의 가중영역은 1년~3년 ⇨ 위험운전치사의 가중영역은 4년~8년으로 상향됨(특히 2개 이상의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으로 12년까지 권고됨)
- 특별가중인자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및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이 있음
- 특히 특별가중인자인 동종누범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죄 전과를 포함하여 가중처벌하고, 일반가중인자인 동종전과에서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가중처벌함

○ 교통사고 후 도주(형량범위 상향)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 1년6월	8월 - 1년6월 2년6월	1년 - 3년5년
2	치상 후 유기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8년
4	치사 후 유기도주 (유기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10년

-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과 균형을 맞추고,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권고하는 의미에서 일부 형량범위를 상향 ⇨ 가중영역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짐